용인고용복지센터 전화: 031-289-2220 // 팩스: 0508-8230-0241

※ 반드시 소득조회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

| 국민취업지원제도 「II유형 청년층 참여희망자 소득·재산조사 등 미실시」 동의서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|
| 신고인 | 성 명 | | 주민등록번호 - | |
| | 주 소 | | | |
| | 휴대전화 (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) | | | |
| 소득조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 | ① 구직촉진수당 |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120% 이하로서 I유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직촉진 수당(월 50만원×6개월) 지급 | | |
| | ② 취업성공수당 |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%인 자에게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, 이후 6 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 지급 | | |
| | ③ 고용촉진장려금 | I 유형으로서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1년간 매 6개월 마다 360만원(대규모 기업 180만원) 지급 | | |
| | ④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율 |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, II유형 특정계층 대비 훈련비 자부담율 불리 | | |

상기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으로서 소득조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을 안내받았으 나, 가구원 동의 및 소득·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Ⅱ유형 청년층으로 신속히 참여하기를 희망 합니다.

특히 가구원 동의 및 소득·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할 경우 구직촉진수당, 취업성공수당, 고용촉진장 려금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원이 불가능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정시점 이후 로는 소득조사를 다시 이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(경기지)청장 귀하